#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03

발의연월일: 2021. 5. 4.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박상혁

신정훈 · 양정숙 · 오영환

오영훈 • 유정주 • 임오경

임호선 · 한병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선적지를 이전 함에 따라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	과세특례) ①
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	
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에 대해서는 <u>2021년 12월 31일</u>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	
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	
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	
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u>2</u>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	024년 12월 31일
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	
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